

2004. 7.15. 10:00

제112회 임시회 중 산업위 제1차 회의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산 업 건 설 위 원 회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I. 검토경과

- ☐ 제출일자 : 2004. 7. 9.
- ☐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 ☐ 회부일자 : 2004. 7. 10.

II. 산업건설위원회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

1. 일반회계

(단위:천원)

구 분	당초예산액	1회추경예산안	증 감	
			증 감 액	비율(%)
합 계	58,662,386	72,359,582	13,697,196	23.3
농 정 과	10,006,727	11,174,273	1,167,546	11.7
경 제 과	1,713,972	4,210,463	2,496,491	45.7
환경녹지과	12,941,741	13,285,709	343,968	2.7
건 설 과	24,891,460	31,766,090	6,874,630	27.6
지역개발과	5,686,823	7,752,107	2,065,284	36.3
농업기술센터	2,170,589	2,254,020	83,431	3.8
상하수도사업소	1,251,074	1,916,920	665,846	53.2

2. 특별회계

(단위:천원)

회 계 명	당초예산액	1회추경예산안	증 감	
			증감액	비율(%)
합 계	20,178,532	20,684,456	505,924	2.5
상 수 도 사 업	6,633,686	7,068,180	434,494	6.5
주 택 사 업	50,066	79,400	29,334	58.6
농 업 발 전 기 금	4,694,515	4,682,507	△12,008	△0.3
농 공 단 지 조 성	1,429,700	1,690,138	260,438	18.2
수 질 개 선	6,848,800	6,539,986	△308,814	△4.5
주 차 장 관 리	521,765	624,245	102,480	19.6

Ⅲ. 검토의견

《농정과 소관》

1. 농특산물전시판매장 설치 임차료지원 60,000천원 (p202)

- 지역우수농특산물의 직거래를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대동리 102-23 소재지에 설치할 23평 규모의 전시판매장 임차료로서 거창농·특산물 생산자연합회에게 위탁관리 하려는 것임.
- 영업실적이 저조하여 폐쇄된 서울 성내동과 잠원동 농산물직판장 임차료 회수금액 125백만원을 세입세출외현금구좌에 예치중인 바, 이를 먼저 활용하지 아니하고 6천만원을 금회 예산에 편성한 사유와 예치된 금액에 대한 향후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 축사진입로 포장사업(500m) 59,352천원 (P208)

- 2002년도 축산종합시책평가 최우수시군 상사업비를 재원으로 가축 및 사료수송이 용이하도록 축사진입로 포장사업을 실시하려는 것임.
- 사업대상지는 사도로써 사업대상위치 선정사유, 수혜자, 가축사육규모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3. 돼지고기 및 축산물운반냉동차량 구입비 지원(2대) 25,600천원 (P209)

- 썩먹인돼지고기 수송을 위한 화물차량(3.5톤규모) 구입비와 도축된 축산물 운반을 위한 냉동차량 구입비 중 일부(80%)를 양돈협회와 축산기업조합에 각각 지원하려는 사업임.
- 돼지수송을 위한 화물차량은 축산농가 대부분이 소유하고 있으므로 차량 지원의 필요성과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축산기업조합에 지원하려는 냉방차량은 현재 동조합에서 냉방차량을 1대를 보유하고 있고, 농민들의 소득증대보다는 영업활동에 이용하는 차량이므로 지원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향후에도 각종 영농관련생산자단체에서 차량구입비 지원요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지원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함.

《경제과 소관》

1. ISO품질인증관련 도비보조사업비 8,500천원 (p218)

- 도내 중소기업제품의 품질향상 및 마케팅능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해외 품질인증 지원사업으로 도에서 컨설팅회사와 계약체결하고 ISO품질인증 획득에 따른 경비에 대하여 도비와 군비로 각 50% 지원하는 사업임.
- 지원대상자 선정방법과 지원업체 내역 및 생산품목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함.

2. 거창상설전시장 주차장 설치사업 1,987,400천원 (p219)

- 거창상설시장 방문객의 편의를 위하여 거창읍 대동리 859-1번지 외 6필지 1,459㎡에 88면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중 국비가 10억원 보조되는 사업임.
- 동 주차장의 출입로는 3.5m정도이나 출구와 입구가 분리됨으로 인하여 주차장관련법령의 규정에는 적합한 것으로 되지만 출입구 양면이 건물의 벽에 접하고 있으며, 진입부분이 직각으로 되어 있어 화물차량이 진입할 경우에는 현재 상태에서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완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동 건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2004.7.9일자 공유재관리계획변경(제3차)안이 제출되어 금번 회기에 의결을 받을 예정이므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 후 예산승인 하여야 할 것임.

《환경녹지와 소관》

1. 폐기물매립장 분리수거 인부임 33,000천원 (p226)

- 폐기물매립장의 반입 재사용 가능품목의 분리수거를 위한 인부임으로 기존 4명에 대한 노임단가 인상금액과 쓰레기매립장의 재사용 가능물품 분리수거를 위하여 추가인원을 배치하려는 것임.
- 금회 추경요구한 금액이 4명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현재 시점이 하반기인 점을 감안하면 8명 정도의 인력배치가 가능할 것임.
- 그러나 금년 6월까지의 재활용품목의 매각금액이 5,700천원 정도로서 투자 효과는 저조할 것으로 분석되나 쓰레기매립장 매립능력 확대, 공기관에서의 분리수거활동을 통한 홍보효과, 그리고 경제활동능력이 떨어지는 지역주민들의 취업효과 등 경제외적인 효과도 있는 점을 감안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할 것임.

2. 공중화장실 설치 75,263천원 (p227)

- 남하면 소재 심소정 주변에 기존 화장실을 제방공사로 인하여 철거하고 현재 이동식화장실을 현대식화장실로 설치하는 것으로 20평 정도 규모로서 교부세 70%, 군비30%각각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부지매입비는 없음)
- 그러나 화장실 규모가 20평 정도인 것을 감안할 때 평당 370만원 정도 투자되는 것은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높은 건축단가가 적용되는 화려한 화장실이 되는 것으로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현지 여건에 적정토록 설계시공하고 잔여예산으로 타지역 추가건립 필요)

3. 생활주변 나무심기 1,538,000천원

(p233)

- 거창읍진입로 농로확·포장사업에 12억원, 위천천 둔치 녹화사업에 3억원 정도 각각 투자하려는 사업임.
- 거창읍진입로 농로확·포장사업은 가로수식재로 인하여 영농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운기와 자전거 등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므로 통행주민들의 불편해소와 영농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편입토지에 대한 공유재산취득은 2004.6.29일자 의결받은 것으로 편입수량은 53필지에 11,008m²이나 실제 보상할 토지는 39필지 3,074m²정도임.
동 사업은 도로법등 관련법에 의한 사업시행이 아니어서 보상가격 불만, 거소불명, 설정권 해지곤란 등의 사유로 협의가 되지 아니할 경우 사업추진이 지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과 세부시행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위천천 둔치녹화사업은 거창읍의 이미지 제고와 계절별 차별화된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거열교-주공아파트 간 3.5km에 녹화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시 일부 지역여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품종식재로 지적된 사례가 있었는 바, 식재예정 품종과 수량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건설과 소관》

1. 봄마무리대구환경지재정리사업 166,752천원 (p202)

- 월평대구환경지재정리사업은 원래 취지와 상이한 용배수로 위주의 사업시행으로 용배수로 사업시행 후에도 일부지구는 양수기를 이용한 급수로 벼를 경작하는 등 사업투자 효과가 저조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임.
- 금회 추경안에 보면 국비보조금이 98,294천원 감액 되었음에도 군비는 무려 239,046천원 증액편성 하였음.
- 재경지정리사업의 경우 국비 80%, 도비6%, 군비14%의 비율로 사업 추진하는 것을 감안하면 예산서 내용대로 총사업비가 2,260,752천원일 경우 국비는 1,808,601천원, 도비는 135,645천원, 군비는 316,505천원으로 변경되어야 함.
- 따라서 국비가 감소되면 군비도 감소되어야 함에도 금회 군비를 삭감하지 아니하고 239,046천원이나 증액편성한 사유와 사업기간이 2004.6.30일까지로 동 사업은 이미 준공되었을 것인바 추경예산 세부용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2.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14개소) 290,000천원 (p242)

- 농촌생활용수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당초예산에서는 11개소 1,870,000천원이 승인(국비1,496,000천원, 군비 374,000천원)된 것으로 금회 추경예산 신청은 14개소로써 3개소가 늘어났으며, 국비는 증액되지 아니하고 군비만 290,000천원 증액한 것으로 되어 있음.
- 당초 사업승인대상 수 보다 3개소 늘어난 사유와 추가 사업 내역과 현재 추진상황, 국비보조금이 증액되지 아니하고 군비만 예산편성한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지역개발과 소관》

1. 가조관광휴양지조성관련 학술용역비 230,000천원 (p259)

- 가조관광종합휴양지 조성관련 에너지사용계획수립용역과 지하수 영향 평가용역을 위하여 편성한 사업비임.
- 동 관광휴양지조성사업과 관련 2003.10-2007.12까지 용역비 171,767천원으로 관광휴양지조성계획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2004년도 당초예산에 영향평가 용역비 3억 6천 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기편성된 예산 사용 내역과 금회 예산편성 요구한 용역사업시행의 법적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